**준법강령**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는 『준법경영 헌장』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준법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준법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이하 “회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내 생활 속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헌장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하며, 그 구체적인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정규직 임직원
2. 회사의 무기 또는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인턴직, 전문상시직, 촉탁직, 전문위원
3. 기타 회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

**제2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3조 (임직원의 기본원칙)**

1. 임직원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경영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회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3. 임직원은 준법경영의 원칙 아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 의식으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직무 수행 및 태도)**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경영원칙, 규정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의 성과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완성한다.
2. 임직원은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향응 편의제공 등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 한다.
3.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자산, 영업비밀 등이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 하며,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한다.
4.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 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공공기간 등 임직원과의 직무 수행 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등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접대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公私의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사적인 사항이 공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접대비, 회식비, 부서운영비 등)을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회사와 당해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업무효율성과 손익을 고려하여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제8조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상호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임직원들 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벌, 성별,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 간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 등 금품 수수(授受)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상호 간의 성적 유혹,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없도록 상호 동료의식을 가지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최선을 다하여 이행토록 노력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6.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 시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한마음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 간에 도와주고 협업한다.
7. 임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한다.
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아니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해 정보가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유출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정보자산의 보호)**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대표이사, 소속 본부장 또는 부서 팀장 등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보안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임직원은 회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영업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3.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생성 또는 인지하게 되는 회사의 보안 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사외로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자산을 일체 남김 없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퇴사 시 보안에 관하여는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 및 위험예방)**

1.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및 임직원의 안전을 회사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2조 (고객 존중)**

1. 회사는 회사의 존재 가치가 고객과 함께함으로써 성장함을 인지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 존중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제13조 (고객 만족)**

1.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 없이 창조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기술적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3. 회사는 고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고객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된 자료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자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3. 회사는 고객에게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 및 고객의 임직원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임직원은 고객의 윤리규정,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고객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5조 (거래법규의 준수)**

1.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업체(고객과 협력회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 한다)와의 관계에 있어 거래 지역의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2. 해외에 위치한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습을 숙지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높은 준법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편법 행위를 하지 아니 하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 (자유경쟁추구)**

1.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국내외 고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회사는 거래 당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업체 간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지 아니 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2. 임직원은 그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협력회사에 대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거래를 조건으로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지 아니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적기에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거래 과정 또는 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 후 보완한다.
4.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영업비밀, 보안정보를 당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상호 발전의 추구)**

1. 회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회사와 공동의 발전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합리적인 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적극적 검토 및 직원 존중)**

1.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업무 수행 중 협력회사의 정당한 요구, 청원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자세를 견지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 차별 대우 또는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지 아니 한다.
3. 회사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협력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애로사항 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 (준수의무와 책임)**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준법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회사의 준법경영최고책임자, 준법경영책임자, 준법경영관리자 및 준법경영 전담 부서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본 준법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며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2조 (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한 준법의식과 준법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의 진행을 외부8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포상과 징계)**

1. 회사는 준법강령 및 준법 지침서를 준수하고 준법경영의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준법경영책임자, 준법경영관리자 등의 추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포상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 준법경영책임자 또는 준법경영관리자는 준법경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상벌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 시기**

본 강령은 『준법경영 헌장』과 함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법강령의 실천**

임직원들이 준법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지침서를 공표 및 운영하여야 한다.